

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2024 SIA 정관 개정안

첨부된 자료는 대의원단이 제 48회 2년 주기 총회에서 검토한 SIA 정관 개정안입니다. 각 안건의 채택에 관한 대의원단의 권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제1안부터 제8안까지는 수정되지 않았으며, 각 안건의 채택에 관한 대의원단의 권고를 추가하여 이전 총회 소집에서 제시된 대로 표시됩니다.

대의원단은 제9안을 수정하여 개정안에서 '글로벌(global)'이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연맹(Federation)'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기존 수정 제안의 경우 **추가 사항은 굵은 이탤릭체로**, 삭제 사항은 한 줄짜리 취소선으로 표시됩니다.(예: ~~삭제~~). 총회 대의원단이 기존 제안에 대해 제시한 수정 사항의 경우 새로운 단어는 **크고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기존 제안에서 삭제하도록 권장하는 단어나 문구는 이중 취소선이 있는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예: ~~**삭제**~~). 귀 클럽은 중앙과 오른쪽 열에 명시된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시면 됩니다. 참고: 기존 조건, 근거, 재정적 영향, 이사회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정 및 SIA 절차 H조의 적합성 변경 사항에는 대의원단이 제안한 모금 위원회의 개정 명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4 SIA 정관 개정안

제안 #1: SIA 정관에 이익분배조항 삽입

제안자: SIA 이사회

개정 사항 미국 국세청의 표준 이익분배조항을 명시하고 이사 및 임원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 II 조 목적 및 권한 규정, 2.01 목적에 새로운 단락 두 개를 삽입한다.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2.01 목적. 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가진다는 비전을 추구한다. (b)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c) 국제 소롭티미스트와 기타 소롭티미스트 연맹과 연합하여 일한다.	2.01 목적. 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가진다는 비전을 추구한다. (b)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c) 국제 소롭티미스트와 기타 소롭티미스트 연맹과 연합하여 일한다. <i>연맹의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또는 대리인 중 연맹에 의해, 또는 연맹을 대신하여 기관이 취하거나 수행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a) 개정된 1986 년 미국 내국세법(이하 “세법”이라 한다)</i>	2.01 목적. 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여성과 소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을 가진다는 비전을 추구한다. (b)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c) 국제 소롭티미스트와 기타 소롭티미스트 연맹과 연합하여 일한다. 연맹의 이사, 임원, 직원, 컨설턴트 또는 대리인 중 연맹에 의해, 또는 연맹을 대신하여 기관이 취하거나 수행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a) 개정된 1986 년 미국 내국세법(이하 “세법”이라 한다) 제 501(c)(3)절에 의거하여 연방

	제 501(c)(3)절에 의거하여 연방 소득세 면제 대상인 경우, (b) 세법 170 절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맹은 공직 후보를 위한 정치적 선거 운동에 참가 또는 개입(성명서 공표 또는 배포 포함)하지 않는다. 연맹 활동의 상당 부분은 세법 제 501(c)(3)절에 의거한 연방 소득세 면세 기관에 대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전 또는 로비 활동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이사 또는 임원이 행하는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득세 면제 대상인 경우, (b) 세법 170 절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맹은 공직 후보를 위한 정치적 선거 운동에 참가 또는 개입(성명서 공표 또는 배포 포함)하지 않는다. 연맹 활동의 상당 부분은 세법 제 501(c)(3)절에 의거한 연방 소득세 면세 기관에 대해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전 또는 로비 활동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이사 또는 임원이 행하는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

근거: 제시된 이익분배조항은 미국 내에서 자선기관 자격(예: 501(c)(3)항 면세 자격)을 갖춘 모든 비영리 단체에 요구된다. 이익분배조항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의 승인을 받은 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의 법인설립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SIA 는 이미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제시된 문구는 501(c)(3)항의 단체와 관련하여 미국 법전(이하 법전)에 명시된 필수 문구이므로 제안된 새 문구는 개정할 수 없다.

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 및 클럽, 지역구, 리전을 포함한 연맹의 모든 하위 분할 기구 조직은 시민 정부의 이익분배조항 및 SIA 절차 규정 A. 일반 사항(제 1 항)에 명시된 오랜 소롭티미스트 전통 및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이사 또는 임원으로 활동하는 개인은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두 번째 단락에 명확히 나와 있다.

SIA 의 법률 고문은 가시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IA 정관 내에 이익분배조항을 넣도록 권장한다.

재정적 영향: 없음.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2: SIA 정관에 새로운 조항(제 XIII 조 해산) 추가

제안자: SIA 이사회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제 XIII 조 해산 <i>법인이 해산할 시, 이사회는 기관의 정관에 규정된 대로 법인의 모든 부채를 지불하거나 지불을 약정한 후 법인의 모든 자산을 해당 법인의 면세 목적만을 위해 처분하거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세법 제 501(c)(3) 절에 의거하여 면세 기관으로 인정되는 자선, 교육 또는 과학 목적으로만 조직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일체의 자산은 해당 법인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민사소송법원에 의해 해당 면세 목적으로만 처분되어야 한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개인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잔여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i>	제 XIII 조 해산 법인이 해산할 시, 이사회는 기관의 정관에 규정된 대로 법인의 모든 부채를 지불하거나 지불을 약정한 후 법인의 모든 자산을 해당 법인의 면세 목적만을 위해 처분하거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세법 제 501(c)(3)절에 의거하여 면세 기관으로 인정되는 자선, 교육 또는 과학 목적으로만 조직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일체의 자산은 해당 법인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민사소송법원에 의해 해당 면세 목적으로만 처분되어야 한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개인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잔여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근거: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법인의 경우 해산 조항이 필요하다. SIA 와 같이 미국에서 자선기관 자격을 갖춘 기관의 경우 해산 조항에 해산 시 기관의 수익금을 미국 국세청 법에 따라 자선, 면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해산 조항은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의 승인을

받은 국제 소롭티미스트 미주연합회의 법인설립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SIA 는 이미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제시된 문구는 501(c)(3)항의 단체와 관련하여 미국 법전(이하 법전)에 명시된 필수 문구이므로 제안된 새 문구는 개정할 수 없다.

SIA 의 법률 고문은 가시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IA 정관 내에 해산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장한다.

재정적 영향: 없음.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3: SIA 임원의 주의의 기준,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및 책임 한계 제공

제안자: SIA 이사회

개정 사항 제 VI 조 임원에 6.10 임원의 주의의 기준,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및 6.11 임원의 개인 책임을 추가한다.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6.10 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임원은 비영리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일반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의, 기술 및 근면을 포함한 주의를 기울여 선의로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원은 다음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를 통해 각기 작성되고 제시된 재무제표, 기타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혹은 성명서 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다. (a) 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합당한 신뢰성과 능력의 존재를 믿는 법인 또는 법인 제휴사 소속의 임원 혹은 직원 한 명 이상. (b)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혹은 기타 인사들 대상으로 임원이 해당 사안에	6.10 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임원은 비영리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일반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의, 기술 및 근면을 포함한 주의를 기울여 선의로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원은 다음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를 통해 각기 작성되고 제시된 재무제표, 기타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혹은 성명서 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다. (a) 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합당한 신뢰성과 능력의 존재를 믿는 법인 또는 법인 제휴사 소속의 임원 혹은 직원 한 명 이상. (b)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혹은 기타 인사들 대상으로 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해당인의 전문적 혹은

	대한 해당인의 전문적 혹은 전문가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해당 사안에 대한 임원의 신뢰가 부당하다고 믿게 하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원의 행위는 선의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선의로 경영판단을 내린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a) 경영판단의 대상이 임원, 임원의 동료 또는 제후사의 개인적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경우, (b) 해당 임원이 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경영판단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c) 해당 임원이 내린 경영판단이 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6.11 <u>임원의 개인 책임</u>. 현재 유효하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어떤 조치를 취했거나, 어떤 조치를	전문가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해당 사안에 대한 임원의 신뢰가 부당하다고 믿게 하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원의 행위는 선의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선의로 경영판단을 내린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a) 경영판단의 대상이 임원, 임원의 동료 또는 제후사의 개인적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경우, (b) 해당 임원이 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경영판단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c) 해당 임원이 내린 경영판단이 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6.11 <u>임원의 개인 책임</u>. 현재 유효하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어떤 조치를 취했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	--	---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a) 임원이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c절 제57조 참조), 및 (b) 그러한 의무 위반과 의무 불이행이 개인적 거래에 기인하거나, 고의적인 부정행위, 또는, 무모함으로 인한 경우. 본 조항은 임원의 형법 위반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법에 따른 임원의 세금 미납에 관한 법적책임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은 전향적인 조치일 뿐이며 이러한 변경 이전에 발생한 행동 또는 취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늘리지 않고 줄일 수 있다.	발생한 재정적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한다. (a) 임원이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c절 제57조 참조), 및 (b) 그러한 의무 위반과 의무 불이행이 개인적 거래에 기인하거나, 고의적인 부정행위, 또는, 무모함으로 인한 경우. 본 조항은 임원의 형법 위반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법에 따른 임원의 세금 미납에 관한 법적책임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은 전향적인 조치일 뿐이며 이러한 변경 이전에 발생한 행동 또는 취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늘리지 않고 줄일 수 있다.
--	--	---

근거: 1988 펜실베이니아 비영리법인법의 2023 년도 개정안에서 기관 이사회의 요건 및 보호와는 별도의 기관 임원에 대한 요건 및 보호 조항이 생겼다. 제안된 해당 신규 조항은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기관의 임원이 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에 명시된 일반 규정에 따라 기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의 이러한 일반 규정은 SIA 임원에게 기대되는 의사 결정 기준과 절차 및 그러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 한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비영리법인 임원 활동을 장려하는 공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SIA 정관에 해당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펜실베이니아 비영리법인법의 2023 년 개정 조항을 대상으로 SIA 의 정관을 검토한 SIA 의 법률고문이 권고한 사항이다. 정관에 해당 신규 조항을 추가하여 모든 회원에게 해당 주제에 대한 가시성 및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법의 2023 년도 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에, 임원은 SIA 정관 8.13 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및 8.18 이사회 임원의 개인 책임 한계에 명시된 이사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새로 제안된 조항은 펜실베이니아 비영리법인법의 2023 년도 개정안에서 직접 가져온 내용이므로 수정할 수 없다.

재정적 영향: 없음.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4: SIA 이사회 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조항 개정

제안자: SIA 이사회

개정 사항 제 VIII 조 이사회, 8.13 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조항명을 “주의의 기준,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및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대체한다.

- (a)항의 첫 번째 단락에서 “일반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근면,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 법에서 해당 문제에 관해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사안과 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1988 펜실베이니아 비영리법인법 5715(a)절(일반적인 권한 행사 관련) 또는 5716(a)절(대체 기준 관련)에 열거된 이익 및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문의”를 삽입하고, “되고 제시된”을 삭제하고, (a)항의 (iii)호 두 번째 단락에 “실제”를 삽입하고, “증명될 수 있는”을 삭제하고, “믿게”를 삽입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하는”을 삽입하고, (a)항의 (iii)호에 “선의로 경영판단을 내린 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로 시작하는 문장을 새로 삽입하고, (i), (ii) 및 (iii)호를 삽입한다.
- (b)항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를 삽입하고, (i)호를 삽입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은 본 8.13 의 (a)항을 위반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를 삭제하고, (ii), (iii) 및 (iv)호를 삽입하고, “이사회, 이사회 위원회 및 각 이사는, 연맹의 최선의 이익 또는 어떤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법인의 이익 또는 특정 그룹의 이익을 두드러지거나 지배적인 이익 또는 요소로 간주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익 및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단락을 삽입하고,
- (c)항을 삭제한다.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8.13 <u>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u> (a) 이사는 연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가지며 연맹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일반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의, 기술 및 근면을	8.13 <u>주의의 기준, 및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및 경영판단의 원칙.</u> (a) 이사는 연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가지며 연맹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u>일반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u>	8.13 <u>주의의 기준,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및 경영판단의 원칙.</u> (a) 이사는 연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가지며 연맹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일반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근면, 그리고

포함한 주의를 기울여 선의로 이사회 위원회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비롯한 이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는 다음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를 통해 각기 작성되고 제시된 재무제표, 기타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혹은 성명서 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다. (i)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합당한 신뢰성과 능력의 존재를 믿는 한 명 이상의 연맹 임원 혹은 직원, (ii)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혹은 기타 인사들 대상으로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해당인의 전문적 혹은 전문가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iii) 이사가 재직하지 않는 이사회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정되고 해당 사안이 지정된 권한 내에 존재하며 이사의 합리적인 신뢰의 가치가 존재하는 위원회. 문제가 되는 사안 관련 정보에 대한 이사의 신뢰가 부당하다고 증명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문의, 기술 및 근면 일반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근면,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 법에서 해당 문제에 관해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사안과 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1988 펜실베이니아 비영리법인법 5715(a)절(일반적인 권한 행사 관련) 또는 5716(a)절(대체 기준 관련)에 열거된 이익 및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문의를 포함한 주의를 기울여 선의로 이사회 위원회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비롯한 이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는 다음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를 통해 각기 작성되고 제시된 재무제표, 기타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혹은 성명서 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다. (i)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합당한 신뢰성과 능력의 존재를 믿는 한 명 이상의 연맹 임원 혹은 직원, (ii)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혹은 기타 인사들 대상으로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해당인의 전문적 혹은 전문가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 법에서 해당 문제에 관해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사안과 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1988 펜실베이니아 비영리법인법 5715(a)절(일반적인 권한 행사 관련) 또는 5716(a)절(대체 기준 관련)에 열거된 이익 및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문의를 포함한 주의를 기울여 선의로 이사회 위원회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비롯한 이사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는 다음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를 통해 각기 작성된 재무제표, 기타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의견, 보고서 혹은 성명서 등을 선의로 신뢰할 수 있다. (i)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합당한 신뢰성과 능력의 존재를 믿는 한 명 이상의 연맹 임원 혹은 직원, (ii)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혹은 기타 인사들 대상으로 이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해당인의 전문적 혹은 전문가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iii) 이사가 재직하지 않는 이사회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정되고 해당 사안이 지정된 권한 내에
--	---	--

이사의 행위는 선의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b) 각자 지위에 따른 해당 의무 수행에 있어서, 이사회, 이사회 위원회 및 각 이사들은, 연맹의 최선의 이익을 감안하여, 직원, 연맹이 사업을 영위하고 기타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연맹의 사무소 혹은 기타 연맹 혹은 연맹과 관련 있는 사무소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은 본 8.13 의 (a)항을 위반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c) 신의성실의무 위반, 선의의 결여 또는 자금의 사적 유용 없이 이사로서 취한 행동 혹은 취하지 않은 행동은 연맹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가정된다.	(iii) 이사가 재직하지 않는 이사회 위원회로서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정되고 해당 사안이 지정된 권한 내에 존재하며 이사의 합리적인 신뢰의 가치가 존재하는 위원회. 문제가 되는 사안 관련 정보에 대한 이사의 신뢰가 부당하다고 증명될 수 있는 믿게 하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는 선의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선의로 경영판단을 내린 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i) 경영판단의 대상이 이사, 이사의 동료 또는 제후사의 개인적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경우, (ii) 해당 이사가 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경영판단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iii) 해당 이사가 내린 경영판단이 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존재하며 이사의 합리적인 신뢰의 가치가 존재하는 위원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이사의 신뢰가 부당하다고 믿게 하는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사의 행위는 선의의 행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선의로 경영판단을 내린 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i) 경영판단의 대상이 이사, 이사의 동료 또는 제후사의 개인적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경우, (ii) 해당 이사가 적절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범위 내에서 경영판단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iii) 해당 이사가 내린 경영판단이 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는 경우. (b) 각자 지위에 따른 해당 의무 수행에 있어서, 이사회, 이사회 위원회 및 각 이사들은 연맹의 최선의 이익을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한다. (i) 직원, 연맹이 사업을 영위하고 기타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연맹의 사무소 혹은 기타 연맹 혹은 연맹과 관련 있는
--	--	---

	(b) 각자 지위에 따른 해당 의무 수행에 있어서, 이사회, 이사회 위원회 및 각 이사들은 연맹의 최선의 이익을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한다. (i) 직원, 연맹이 사업을 영위하고 기타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연맹의 사무소 혹은 기타 연맹 혹은 연맹과 관련 있는 사무소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 아래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은 본 8.13의 (a)항을 위반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ii) 연맹의 장기 계획으로 발생하는 이익 및 연맹의 지속적인 독립을 통해 이러한 이익을 가장 잘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연맹의 장단기 이익. (iii) 연맹의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자의 자원, 의도 및 행동(과거, 명시적, 잠재적). (iv) 기타 모든 관련 요소. 이사회, 이사회 위원회 및 각 이사는, 연맹의 최선의 이익 또는 어떤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특정 그룹의 이익 또는 법인의 이익을 두드러지거나	사무소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 (ii) 연맹의 장기 계획으로 발생하는 이익 및 연맹의 지속적인 독립을 통해 이러한 이익을 가장 잘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연맹의 장단기 이익. (iii) 연맹의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자의 자원, 의도 및 행동(과거, 명시적, 잠재적). (iv) 기타 모든 관련 요소. 이사회, 이사회 위원회 및 각 이사는, 연맹의 최선의 이익 또는 어떤 조치의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는 법인의 이익 또는 특정 그룹의 이익을 두드러지거나 지배적인 이익 또는 요소로 간주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익 및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	---	---

	지배적인 이익 또는 요소로 간주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익 및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c) — 신의성실의무 위반, 선의의 결여 또는 자금의 사적 유용 없이 이사로서 취한 행동 혹은 취하지 않은 행동은 연맹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가정된다.	
--	--	--

근거: 1988 펜실베이니아 비영리법인법의 2023 년도 개정안에서 이사회 이사의 주의의 기준, 정당화할 수 있는 신뢰 및 경영판단의 원칙이 변경되었다. 언급된 변경 사항은 SIA 정관이 주법에 맞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가 직무 수행 시 고려할 수 있는 이익 및 요소에 대하여 모든 회원에게 가시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법의 이러한 일반 규정은 SIA 이사회에게 기대되는 의사 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비영리법인 이사 활동을 장려하는 공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 제안은 펜실베이니아 비영리법인법의 2023 년도 개정안에서 직접 가져온 내용이므로 수정할 수 없다.

재정적 영향: 없음.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5: SIA 이사회의 SIA 정관 개정 제안 시기를 다시 명시하기 위함

제안자: SIA 이사회

개정 사항 XII 조 개정 12.01 개정안의 (b)항에서 “글로벌 차원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기에는”을 삭제하고 “연맹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을 수행해야 할 때마다”를 삽입하도록 대체한다.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12.01 <u>개정안</u> (b) 글로벌 차원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기에는 해당 연맹 정관의 개정 심의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반드시 해당 제안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성명도 포함해야 한다.	12.01 <u>개정안</u> (b) 연맹 이사회는 <i>연맹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을 수행해야 할 때마다</i> 글로벌 차원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기에는 해당 연맹 정관의 개정 심의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반드시 해당 제안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성명도 포함해야 한다.	12.01 <u>개정안</u> (b) 연맹 이사회는 연맹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을 수행해야 할 때마다 해당 연맹 정관의 개정 심의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은 반드시 해당 제안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성명도 포함해야 한다.

근거: SIA 정관 XII 조 이사회, 8.02 권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는 연맹의 사업 및 업무를 이행, 관리 및 감독할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현재 명시된 SIA 12.01(b)항은 SIA 정관의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SIA 이사회는 클럽이 직접 선출하여 기관의 관리인 및 수탁자가 된다. 이사회는 법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SIA 이사회는 연맹의 자산과 평판을 보호하고 위험부담을 경감하는 등 오로지 SIA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SIA 이사회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클럽과 회원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SIA 를 감독 및 관리해야 한다. SIA 정관 변경의 경우 이사회가 변경을 제안할 수 있지만, 우편투표를 통해 해당 제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클럽의 책임이다.

SIA 이사회는 제 XII 조 12.01 개정안(b)을 클럽에 제출한다. 정관 제 XIII 조는 2022 년 클럽의 투표를 통해 두 가지 경로(대의원들이 2 년 주기 총회에서 심의할 개정안 및 2 년 주기 총회 외에서 심의할 개정안)로 개정안을 제공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2022 년도 제안의 경우 2022 년 가상 총회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토론 없이 제안을 수정했고, 제안 개정 동의를 이루어졌으며, 대의원들은 발의안 및 개정된 제안을 수락하기로 투표했고, 대의원들이 개정된 제안을 승인 후 클럽에 추천하여 다음 우편 투표에서 승인하도록 했다.

2022 년도 제안 개정은 12.01 (b)항에서 이루어졌으며, “연맹 이사회는 *언제든지* 연맹 정관의 개정 심의를 제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연맹 이사회는 *글로벌 차원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기에는* 해당 연맹 정관의 개정 심의를 제안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다.

“글로벌 차원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기에는”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는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에는 제공되지 않았다. SIA 이사회에게 있어 그 의미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SIA 이사회는 회원, 클럽, 미래의 SIA 이사회가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거버넌스 문서에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2022 년도 개정안을 준비했다. 2022 년도 제안 원본은 이사회가 2 년 주기 총회 일정 외에 클럽에 SIA 정관 제안을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상상력의 부족”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2 년간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는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영향 또는 법적 영향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분야의 경우 특정 국가 또는 주, 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다. SIA 와 이사회의 지속적인 연맹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점은 비영리 및 자선 법인의 행동방식에 관한 법이 지속적으로 평가되는 중이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 또는 위협(내부 또는 외부)으로 인해 SIA 이사회는 거버넌스 변경을 제안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적시에 대응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SIA 정관의 “글로벌 차원의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기회 및 위협은 2 년 주기 총회와 우편투표라는 SIA 의 자체적인 주기에 맞춰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SIA 이사회는 향후 SIA 이사회가 SIA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년 주기 총회 일정 외에도 클럽의 심의 및 조치를 요청하는 SIA 정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12.01(b)항의 개정을 제안한다.

재정적 영향: 현재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사회가 적시에 개정을 제안하지 못하면 SIA 는 잠재적으로 막대한 수익 또는 기타 자원 손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6: 선거구 수를 13 개로 감축

제안자: SIA 이사회

개정 사항 VIII 조 이사회 8.04 선거구의 (k)항에 중앙 동부 해안 및 북대서양을 삽입하고, (l)항의 중앙 동부 해안 및 북대서양 리전을 삭제하고 북서부 및 피크 투 플레인 리전을 삽입하고, (m)항의 북서부 및 피크 투 플레인 리전을 삭제하고 대만 리전을 삽입하고, (n)항을 삭제하도록 대체한다.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8.04 <u>선거구</u>.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a) 제 1 선거구: 브라질 리전 (b) 제 2 선거구: 동부 및 서부 캐나다 리전 (c) 제 3 선거구: 일본 미나미 및 니시 리전 (d) 제 4 선거구: 일본 히가시 및 기타 리전 (e) 제 5 선거구: 한국 리전 (f) 제 6 선거구: 멕시코/중미 및 아메리카 델 수르 리전 (g) 제 7 선거구: 필리핀 리전 (h) 제 8 선거구: 일본 주요 리전 (i) 제 9 선거구: 카미노 레알, 데저트 코스트 및 골든 웨스트 리전 (j) 제 10 선거구: 파운더, 시에라 네바다 및 시에라 퍼시픽 리전 (k) 제 11 선거구: 중서부, 중앙북부, 중앙남부, 남부 리전	8.04 <u>선거구</u>.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a) 제 1 선거구: 브라질 리전 (b) 제 2 선거구: 동부 및 서부 캐나다 리전 (c) 제 3 선거구: 일본 미나미 및 니시 리전 (d) 제 4 선거구: 일본 히가시 및 기타 리전 (e) 제 5 선거구: 한국 리전 (f) 제 6 선거구: 멕시코/중미 및 아메리카 델 수르 리전 (g) 제 7 선거구: 필리핀 리전 (h) 제 8 선거구: 일본 주요 리전 (i) 제 9 선거구: 카미노 레알, 데저트 코스트 및 골든 웨스트 리전 (j) 제 10 선거구: 파운더, 시에라 네바다 및 시에라 퍼시픽 리전	8.04 <u>선거구</u>.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a) 제 1 선거구: 브라질 리전 (b) 제 2 선거구: 동부 및 서부 캐나다 리전 (c) 제 3 선거구: 일본 미나미 및 니시 리전 (d) 제 4 선거구: 일본 히가시 및 기타 리전 (e) 제 5 선거구: 한국 리전 (f) 제 6 선거구: 멕시코/중미 및 아메리카 델 수르 리전 (g) 제 7 선거구: 필리핀 리전 (h) 제 8 선거구: 일본 주요 리전 (i) 제 9 선거구: 카미노 레알, 데저트 코스트 및 골든 웨스트 리전 (j) 제 10 선거구: 파운더, 시에라 네바다 및 시에라 퍼시픽 리전

(l) 제 12 선거구: 중앙동부 해안 및 북대서양 리전	(k) 제 11 선거구: 중앙동부 해안, 중서부, 북대서양, 중앙남부 및 남부 리전	(k) 제 11 선거구: 중앙동부 해안, 중서부, 북대서양, 중앙남부 및 남부 리전
(m) 제 13 선거구: 북서부 및 픽크 투 플레인 리전	(l) 제 12 선거구: 중앙동부 해안 및 북대서양 리전 북서부 및 픽크 투 플레인 리전	(l) 제 12 선거구: 북서부 및 픽크 투 플레인 리전
(n) 제 14 선거구: 대만 리전	(m) 제 13 선거구: 북서부 및 픽크 투 플레인 리전 대만 리전	(m) 제 13 선거구: 대만 리전
	(n) 제 14 선거구: 대만 리전	

단서: 해당 안건이 승인될 경우, 제 11 선거구는 2025 년 7 월에 시작되는 이사회 후보 지명 및 선출 주기에 참여하여 2026-2028 이사회 임기를 역임할 이사회 임원을 결정한다. SIA 이사회의 후보 지명 방식 개정에 대한 제안 7 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5 개 리전과 SIA 본부가 이사회 임원 후보를 지명할 리전 순서를 결정한다.

근거: SIA 이사회는 2017 년부터 선거구 구조를 검토하여 이사회 규모를 13 개 선거구로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권의 이사회 참여 기회를 늘릴 방식을 결정해 왔다. 2020 년에 이사회는 선거구를 14 개로 늘리도록 제안했고, 클럽들은 이를 승인했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하나의 선거구를 공유했던 한국 리전과 대만 리전의 클럽들에 각자의 매우 다른 문화를 반영하는 두 개의 선거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연맹의 다른 리전에 비해 이들 리전의 클럽과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20 년도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몇몇 클럽은 이사회가 한국 리전과 대만 리전에 두 개의 선거구가 필요한데 클럽 및 회원 수가 감소 중인 공통된 언어 및 문화적 특성을 보유한 선거구를 통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0~2021 년에 선거구 태스크포스가 모여 거버넌스 구조를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SIA 이사회는 선거구 수, 후보 지명 및 선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실무 이사회는 선거구 수에 대한 검토를 미국의 선거구 수 축소로 한정하였다. 여러 선거구가 있는 국가에 집중함으로써 SIA 이사회가 선거구의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간주하는 요소인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보장하였다.

선거구 구조 변경은 1991 년 미국 회원 수가 클럽 929 개/회원 32,953 명이었던 이후, 그리고 13 개 중 6 개 선거구가 미국 내 클럽에 할당된 이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는 2004 년에 일어났다. 일본의 회원 증가(1991 년 클럽 327 개/회원 11,047 명에서 2003 년 클럽 539 개/회원

15,344 명으로 증가)와 미국의 회원 감소(2003 년 클럽 701 개/회원 22,743 명)를 감안하여, 클럽은 미국에 배정된 선거구 수를 6 개에서 5 개로 줄이고 일본에 배정된 선거구를 2 개에서 3 개로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했다.

- 제 8 선거구를 일본 주오 리전에 배정(전 카미노 레알 및 카시에라 퍼시픽 리전)
- 카미노 레알 리전을 데저트 코스트 및 골든 웨스트 리전과 함께 제 9 선거구로 이동
- 시에라 퍼시픽 리전을 파운더, 시에라 네바다 리전과 함께 제 10 선거구로 이동
- 제 3 선거구를 일본 미나미 및 니시 리전에 배정
- 제 4 선거구를 일본 히가시 및 키타 리전에 배정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와 중부에 위치한 두 선거구의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제 11 선거구(중서부, 중남부 및 남부 리전)와 제 12 선거구(중앙동부 해안 및 북대서양 리전)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자는 위원회의 제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이 두 개 선거구의 클럽 및 회원 수의 규모와 1991 년 이후 선거구 내 인구 통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미국 내 회원 수는 클럽 432 개, 회원 11,288 명이다(2024 년 1 월 31 일 기준). 미국의 선거구별 회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 번호	2024 년 리전별 선거구 구성 현황	2024 년 클럽/회원 수	현 제 11 선거구와 제 12 선거구가 통합/합병되는 경우	1991 년 클럽/회원 수(현 리전 구성 기준)
11	중서부, 중앙남부, 남부 리전	클럽 66 개 회원 1,595 명	클럽 123 개 회원 3,007 명	클럽 188 개 회원 5,629 명
12	중앙동부 해안 및 북대서양 리전	클럽 57 개 회원 1,412 명		클럽 170 개 회원 5,501 명
9	카미노 레알, 데저트 코스트 골든 웨스트 리전	클럽 91 개 회원 2,328 명		
10	파운더, 시에라 네바다 및 시에라 퍼시픽 리전	클럽 125 개		

		회원 3,299 명		
13	북서부 및 피크 투 플레인 리전	클럽 93 개 회원 2,654 명		

제 11 선거구와 제 12 선거구를 통합하면 클럽 및 회원 기준으로 두 개의 가장 작은 미국 선거구가 통합되어 클럽 및 회원 수 측면에서 다른 미국 선거구와 더욱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선거구가 생긴다. 회원들은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소롭티미스트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히 향후 이사회 후보 지명이 “중대 선거구제 기반으로 선출”로 이루어질 경우, 회원 수 측면에서 선거구가 확대되어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잠재적인 SIA 이사회 임원 인력풀이 더 넓어진다. 2004 년 미국 서부의 선거구가 마지막으로 재구성된 이후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 변경 제안을 통해 미국 동부 및 중부 지역이 회원 감소에 따른 선거구 변경을 수용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제 11 선거구와 제 12 선거구를 합치면 대륙 기준으로 거대 규모의 선거구가 생기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SIA 산하의 다른 두 개 선거구도 대규모의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동부 및 서부 캐나다 리전으로 구성된 제 2 선거구와 중미 전역 및 남미 대륙의 상당한 면적을 포함하는 제 6 선거구이다.

재정적 영향: 코로나 19 가 발생한 이후 SIA 는 이사회 회의를 가상 플랫폼으로 옮겨 이사회가 더 자주 모이도록 했다. 이사회는 2 년 주기 총회 기간에는 직접 만나고, 그 외 모든 시기에는 가상 플랫폼을 통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 회원을 한 명 줄이면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교통비, 숙박비, 식사 비용 등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 년 동안 이사회 규모를 약간 축소하여 연맹이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계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변경 사항: 해당 안건이 승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SIA 정관에 적용된다.

제안 #6.A. 정관 8.01 구성과 재임 기간.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8.01 <u>구성과 재임 기간</u> . 이사회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한 정규 회원으로서 최소 14 명으로 구성되어야	8.01 <u>구성과 재임 기간</u> . 이사회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한 정규 회원으로서 최소 14 명 13 명 으로	8.01 <u>구성과 재임 기간</u> . 이사회는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한 정규 회원으로서 최소 13 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장 또는 차기 회장이 자신의 임기를 만료하기 위해 이사회에 남는다면 이사회는 16 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사로서의 임원은 선거가 열리는 해의 9 월 1 일부터 시작하여 2 년 동안 재임하게 되며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또는, 그들 스스로 이사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임원직을 수행한다.	구성되어야 한다. 회장 또는 차기 회장이 자신의 임기를 만료하기 위해 이사회에 남는다면 이사회는 16명 15 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사로서의 임원은 선거가 열리는 해의 9 월 1 일부터 시작하여 2 년 동안 재임하게 되며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또는, 그들 스스로 이사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임원직을 수행한다.	한다. 회장 또는 차기 회장이 자신의 임기를 만료하기 위해 이사회에 남는다면 이사회는 15 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이사로서의 임원은 선거가 열리는 해의 9 월 1 일부터 시작하여 2 년 동안 재임하게 되며 후임자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또는, 그들 스스로 이사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임원직을 수행한다.
---	---	---

SIA 정관에 따른 변경 사항 외에도 SIA 절차 H. 후보 지명과 선출 절차 1 항목에서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또한 제안 #7 SIA 이사회 후보 지명 방식 개정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변경 사항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안 #6: 선거구 수를 13 개로 감축하자는 제안이 승인되는 경우, SIA 이사회는 2024 년 12 월 이후 우편투표 종료 후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개정된 SIA 정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변경한다.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7: SIA 이사회 후보 지명 방식을 개정하기 위함.

제안자: SIA 이사회

개정 사항 제 VIII 조 이사회 8.05 후보 지명의 첫 문단에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순환제 기반으로 선출 혹은 중대 선거구제 기반으로 선출 중에서 선택하여 지명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구 내 클럽 회원들이 변경하기로 투표하기 전까지 유효하다.”를 삭제하고, “(a) 중대 선거구제 기반으로 선출. 선거구 내 어떤 클럽에서건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b) 순환제 기반으로 선출.”을 삭제하고, 해당 항의 단락을 새 단락으로 설정하고 “혹은”을 삭제하고, “그리고 각 리전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클럽으로 구성”을 삽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후보” 및 “만”을 삽입하고, “순환제는 선거구 내 모든 클럽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5 년마다 클럽의 투표를 통해 재확인 또는 갱신된다. 선거구에서 순환제를 신설하거나 재확인 또는 갱신하기 위한 클럽 간의 모든 투표는 본부에서 관리한다.”를 해당 단락에 삽입하고, 마지막 단락을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각 선거구는 자체 리전을 대표할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를 때때로 행사한다.” 뒤로 옮겨 추가하고, 첫 번째 단락에 추가한 해당 항에서 “자격을 갖춘”을 삭제하고 “모든”을 삽입하여 대체한다.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8.05 <u>후보 지명.</u> 각 선거구는 수시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통해 리전을 대표할 이사회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순환제 기반으로 선출 혹은 중대 선거구제 기반으로 선출 중에서 선택하여 지명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구 내 클럽 회원들이 변경하기로 투표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a) <u>중대 선거구제 기반으로 선출.</u> 선거구 내 어떤 클럽에서건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8.05 <u>후보 지명.</u> 각 선거구는 수시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통해 리전을 대표할 이사회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순환제 기반으로 선출 혹은 중대 선거구제 기반으로 선출 중에서 선택하여 지명할 수 있으며, 이는 선거구 내 클럽 회원들이 변경하기로 투표하기 전까지 유효하다. 매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서기/회계는 그해에 이사를 선택하는 선거구 내의 자격을 갖춘 모든 클럽을 초대하여 이사회 후보를 지명한다.	8.05 <u>후보 지명.</u> 각 선거구는 자체 리전을 대표할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를 때때로 행사한다. 매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서기/회계는 그해에 이사를 선택하는 선거구 내의 모든 클럽을 초대하여 이사회 후보를 지명한다. 본부에 의해 후보의 자격이 심사되고, 이사회가 채택한 마감 기한과 절차에 따라 출마하기로 동의한 지명 후보의 규격화된 이력서가 완결된다.

(b) <u>순환제 기반으로 선출.</u> 선거구가 두 개 이상의 리전 혹은 국가를 포함한 경우, 이사 후보를 제출할 리전 혹은 국가를 돌아가면서 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차례가 돌아온 선거구 내 구역에서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순환제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선거구 내 클럽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연맹 이사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매년 8 월 1 일 또는 그 이전에, 서기/회계는 그해에 이사를 선택하는 선거구 내의 자격을 갖춘 클럽을 초대하여 이사회 후보를 지명한다. 본부에 의해 후보의 자격이 심사되고, 이사회가 채택한 마감 기한과 절차에 따라 출마하기로 동의한 지명 후보의 규격화된 이력서가 완결된다.	본부에 의해 후보의 자격이 심사되고, 이사회가 채택한 마감 기한과 절차에 따라 출마하기로 동의한 지명 후보의 규격화된 이력서가 완결된다. (a) 중대 선거구제 기반으로 선출. 선거구 내 어떤 클럽에서건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b) 순환제 기반으로 선출. 선거구가 두 개 이상의 리전을 포함한 경우, 혹은 그리고 각 리전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클럽으로 구성된 경우, 이사 후보를 제출할 리전 혹은 국가를 돌아가면서 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례가 돌아온 선거구 내 구역에서만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순환제는 선거구 내 모든 클럽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5년마다 클럽의 투표를 통해 재확인 또는 갱신된다. 선거구에서 순환제를 신설하거나 재확인 또는 갱신하기 위한 클럽 간의 모든 투표는 본부에서 관리한다. 순환제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선거구 내 클럽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구가 두 개 이상의 리전을 포함한 경우, 그리고 각 리전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클럽으로 구성된 경우, 이사 후보를 제출할 리전 혹은 국가를 돌아가면서 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례가 돌아온 선거구 내 구역에서만 후보를 제안할 수 있다. 순환제는 선거구 내 모든 클럽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5년마다 클럽의 투표를 통해 재확인 또는 갱신된다. 선거구에서 순환제를 신설하거나 재확인 또는 갱신하기 위한 클럽 간의 모든 투표는 본부에서 관리한다. 순환제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선거구 내 클럽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연맹 이사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	---

	연맹 이사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매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서기/회계는 그해에 이사를 선택하는 선거구 내의 자격을 갖춘 클럽을 초대하여 이사회 후보를 지명한다. 본부에 의해 후보의 자격이 심사되고, 이사회가 채택한 마감 기한과 절차에 따라 출마하기로 동의한 지명 후보의 규격화된 이력서가 완결된다.	
--	--	--

단서: 해당 안건이 승인될 경우, 2025 년 7 월 말에 시작되는 지명 및 선거 기간부터 선거구 내 리전의 순환제가 폐지되고, 제 6 선거구는 2026 년 7 월 다음 지명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순환제를 통해 후보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SIA 는 1991 년 이전에는 집행위원 7 명(1 년에 여러 차례 모임) 및 리전 총재 27 명의 이사회로 구성된 대규모의 복잡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이사회는 2 년마다 각 해의 연초 및 연말에만 모였다. 1991 년 개정된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이사회는 각 선거구별로 한 명씩 임명되어 13 명으로 축소되었다.

선거구 지명에 관한 정기적인 주기가 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개 이상의 리전으로 구성된 각 선거구 내 모든 리전이 이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례대로 보유한다는 일반적인 원리에 기반하였으며, 모든 리전이 이사회에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리전 순환제 주기도 도입되었다.

1991 년 당시에는 이 원리가 이사회에서 리전 대표성을 보장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SIA 의 거버넌스에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두 개 이상의 리전이 있는 선거구에 순환제를 적용하면 회원은 해당 리전에서 이사회 회원을 지명하고 선출할 “차례”가 되었을 때만 연맹의 임원 직책에 도전할 수 있다. 이는 흔히 개인 회원이 SIA 이사회에서 임원 직책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이 제도를 30 년 이상 운영해 온 SIA 이사회는 이제 “차레”라는 원리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을 때마다 이사회에 리더십을 보태고자 하는 모든 회원이 선출될 기회를 보장하는 원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SIA 이사회가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계기가 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과 질문이 있다.

- 클럽의 개인 회원은 클럽, 리전 및 지역구, 연맹, 국제 소롭티미스트 등 모든 수준의 소롭티미스트에서 임원 직책을 맡아 봉사하도록 요구받는다.
- 개인 회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SIA 이사회를 비롯한 임원으로 봉사할 관심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회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 선거구 제도가 시행된 1991 년 이후 SIA 의 개인 회원 수는 48,990 명에서 25,410 명으로 감소했다.
- 현재 선거구에 후보가 한 명뿐인 상황에서 순환제를 통해 실시되는 이사회 선거 횟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 한 개의 리전에서 지명될 차레인 후보가 한 명뿐인 경우, 해당 선거 주기 동안 선거구 내의 다른 리전에서도 직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추가 후보가 있는가?
 - “차레”가 있고 후보가 한 명뿐인 경우, SIA 이사회 임원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은 SIA 이사회 임원이 이사회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및 경험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는가?
 - 후보 선택의 폭이 좁은 경우, 이는 클럽의 선거 참여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SIA 이사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이사회 후보를 지명할 때마다 SIA 내 모든 리전의 회원들이 SIA 이사회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만, 현재 연맹에 다른 방식의 지명이 적합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SIA 에는 여러 리전으로 구성된 지역인 제 6 선거구(아메리카 델 수르 및 멕시코-중미 리전)가 있으며, 각 리전은 여러 국가의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및 서로 다른 경험이 너무 많으면 권력 공유의 역학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SIA 이사회는 각 지역마다 여러 국가가 포함된 여러 지역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최소 한 개 이상 있는 현재 상황과 향후 다지역/다국가 지역이 될 수 있는 선거구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선거구에서 개방형 후보 지명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다지역/다국가 상황에 있는 선거구에서는 투표를 통해 선출 순환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5 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순환제에 대한 해당 선거구 내 클럽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재정적 영향: 매우 적거나 전혀 없음. 이제 후보 지명은 전자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선거구의 모든 클럽에 후보 지명 요청서를 배포해도 재정적 영향이 없다. 선거구에서 후보 지명 순환제 일정을 수립하거나 재확인하는 활동이 있는 해에는 순환제를 수립하거나 재확인하는 데 최소한의 번역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후보 지명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며, 이미 책정된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변경 사항: 채택될 경우, SIA 절차 H. 후보 지명과 선출 절차는 제 1 항, a 및 c 호를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개정된다.

연맹 절차 H. 후보 지명과 선출 절차

1. 이사회 선거구는 SIA 정관 제 VIII 조에 규정되어 있다. SIA 정관 8.05 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구에서 순환제를 허용하지 않는 한, 선거구 내 모든 클럽에서 모든 회원에 대한 지명을 수락한다. 아래 차트에는 순환제 지명 및 선출을 선택한 선거구 및 순환제 재확인 일정(굵은 글씨로 표시)이 나와 있다.

제 1 선거구(브라질)

제 2 선거구(동부 및 서부 캐나다 리전)

제 3 선거구(일본 미나미 및 니시 리전)

제 4 선거구(일본 히가시 및 기타 리전)

제 5 선거구(한국)

제 6 선거구(멕시코/중미 및 아메리카 델 수르 리전)

제 7 선거구(필리핀 리전)

제 8 선거구(일본 주오 리전)

제 9 선거구(카미노 레알, 데저트 코스트 및 골든 웨스트 리전)

제 10 선거구(파운더, 시에라 네바다 및 시에라 퍼시픽 리전)

제 11 선거구(중서부, 중남부 및 남부 리전)

제 12 선거구 (북대서양 및 중앙 동부 해안 리전)

제 13 선거구(북서부 및 피크 투 플레인 리전)

제 14 선거구(대만 리전)

- a. 8 월 1 일까지, 서기/회계는 해당 선거구의 각 클럽에 이사 입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회원의 명단을 요청하고 입수한다. 선거구가 SIA 정관 8.05 에 정의된 대로 후보 지명 순환제를 허용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서기/회계는 후보 자격이 있는 선거구 내 구역에서 각 한 개의 클럽만 초청해야 한다. 후보 명단 제출을 희망하는 클럽은 9 월 15 일까지 후보의

이름을 본부로 통지해야 한다. 본부는 후보의 입후보 자격을 확인하고, 그 명단이 이미 통보된 각 입후보자에게 입후보 자격 진술서 양식 및 후보 수락서 양식 그리고 10 월 25 일까지 작성한 양식을 본부로 회송해야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발송한다. 본부는 모든 양호한 상태의 클럽에 11 월 10 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기표가 된 투표용지는 그 개표를 위해서 본부 또는 전자 투표 플랫폼으로 회송되어야 한다.

- c.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구성된 선거구는 선출 방식을 중대 선거구제에서 순환제로 변경할 수 있다. 제안 지역은 늦어도 12 월 15 일까지 선거 방식 변경 요청 의향을 SIA 본부와 선거구의 다른 리전으로 전달해야 한다. 본부는 근거 및 추가 정보를 포함한 의제를 작성하고, 각 리전의 토론을 위한 총회 통지서에 포함한다. 해당되는 모든 리전은 동일한 보충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해당 리전 총회가 모두 종료된 후, SIA 본부는 해당 선거구 내 모든 클럽을 대상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우편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를 실시하는 클럽의 과반수가 의제를 결정한다. 순환제가 선택되었으나 명확한 순환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SIA 본부와 해당 리전이 순환 순서를 결정한다. 선거 방식의 변경은 해당 선거구가 관련된 차기 선거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순환제가 선택된 경우, 위에 명시된 대로 5 년마다 실시되는 우편투표를 통해 해당 선거구 내에서 투표한 클럽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순환제를 채택한 선거구는 5 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재확인 투표에서 중대 선거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8: SIA 이사회 선출 방식을 갱신하기 위함.

제안자: SIA 이사회

개정 사항 제 VIII 조 이사회 8.06 선거에서 “내 구역”을 삭제한다.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u>8.06 선거.</u> 본부는 해당 해에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 내 구역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모든 양호한 상태의 클럽에 우편 투표용지 및 각 후보의 표준화 된 이력서를 우송하여 제공한다. 세 사람 이상의 후보가 투표 대상인 경우, 각 클럽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 순위로 등급을 정하여 선호 순위 방식으로 투표한다. 과반수의 표를 확보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이사회로 선출된다.	<u>8.06 선거.</u> 본부는 해당 해에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 내 구역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모든 양호한 상태의 클럽에 우편 투표용지 및 각 후보의 표준화 된 이력서를 우송하여 제공한다. 세 사람 이상의 후보가 투표 대상인 경우, 각 클럽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 순위로 등급을 정하여 선호 순위 방식으로 투표한다. 과반수의 표를 확보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이사회로 선출된다.	<u>8.06 선거.</u> 본부는 해당 해에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에서 투표 자격을 얻은 모든 양호한 상태의 클럽에 우편 투표용지 및 각 후보의 표준화 된 이력서를 우송하여 제공한다. 세 사람 이상의 후보가 투표 대상인 경우, 각 클럽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 순위로 등급을 정하여 선호 순위 방식으로 투표한다. 과반수의 표를 확보한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이사회로 선출된다.

근거: 이사회 선출에 관한 현 정관의 8.06 은 연맹의 임원 선출 및 클럽의 SIA 이사회 구성 선택에 대한 발언권 보장 면에서 클럽 간 불평등 조성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단일 지역으로 구성된 선거구(브라질, 일본 주오, 대만, 필리핀, 한국 리전, 제 9 선거구(카미노 레알, 데저트 코스트 및 골든 웨스트 리전)의 클럽이 2 년마다 이사회 임원 선출 투표를 실시한다. 다른 모든 선거구의 클럽은 선거구 내 리전 간 순환제 때문에 4 년 또는 6 년마다만 투표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두 지역이 합병되기 전까지 한 선거구에서는 선거 주기가 8 년으로 늘어났다.

SIA 이사회는 연맹의 모든 클럽(양호한 상태)이 속한 해당 선거구가 선거에 포함될 때마다 SIA 이사회 구성에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는 모든 클럽에 공정성, 형평성,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각 클럽은 선거구 투표가 있을 때마다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SIA 이사회는 SIA 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적 영향: 없음.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총회 소집 통지서에 제시된 대로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안 #9: 모금 위원회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름을 글로벌 모금 위원회로 바꾸고자 함.

제안자: SIA 이사회

개정 사항 제 IX 조 위원회 9.02 모금 위원회에서 위원회명에 “글로벌”을 삽입하고, “2 년 임기시차제로 SIA 이사회가 임명한 5 명의 위원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하도록 대체한다. 해당 위원은 2 년 임기를 2 번 연속으로 역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자문역으로 봉사하는 위원장을 투표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 모금 위원회”를 삭제하고, “글로벌 모금 위원회는 최대 1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SIA 이사회가 정의한다.”를 삽입하고, (a), (b), (c), (d)항을 삽입한다.

현재 내용	개정안	개정 시 내용
9.02 모금 위원회는 2 년 임기시차제로 SIA 이사회가 임명한 5 명의 위원이 있어야 한다. 해당 위원은 2 년 임기를 2 번 연속으로 역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자문역으로 봉사하는 위원장을 투표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 모금 위원회는 SIA 이사회가 관장하여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의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자선 기부, 선물, 후원업체 및 유산의 기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며,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을 뒷받침하는 기금조성에 관한 추천을 한다.	9.02 글로벌연맹 모금 위원회는 2년 임기시차제로 SIA 이사회가 임명한 5 명의 위원이 있어야 한다. 해당 위원은 2년 임기를 2번 연속으로 역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자문역으로 봉사하는 위원장을 투표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 모금 위원회는 SIA 이사회가 관장하여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의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자선 기부, 선물, 후원업체 및 유산의 기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며,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을 뒷받침하는 기금조성에 관한 추천을 한다. <u>글로벌연맹 모금 위원회는 최대 1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할</u>	9.02 <u>연맹</u> 모금 위원회는 SIA 이사회가 관장하여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의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자선 기부, 선물, 후원업체 및 유산의 기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하며, 이사회의 수탁자 책임을 뒷받침하는 기금조성에 관한 추천을 한다. 연맹 모금 위원회는 최대 1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SIA 이사회가 정의한다. (a) SIA 이사회가 임명한 임기 1 년의 공동위원장 2 명, (b) SIA 이사회가 임명한 임기 1 년의 차기 공동위원장 2 명. 두 명의 차기 공동위원장은 차기 공동위원장 임기가

	수 있는 자격은 SIA 이사회가 정의한다. (a) SIA 이사회가 임명한 임기 1 년의 공동위원장 2 명, (b) SIA 이사회가 임명한 임기 1 년의 차기 공동위원장 2 명. 두 명의 차기 공동위원장은 차기 공동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공동위원장직을 승계한다. (c) 이사회가 임명한 임기 1 년의 SIA 이사회 연락 담당 위원 1 명. 이사회 연락 담당자가 이사회 임기 첫해에 임명된 경우, 이사회 임기 2 년 차에 이사회 연락 담당자로 재임명될 수 있다. (d) SIA 이사회는 임기 2 년의 국가 임원을 최대 9 명까지 임명하며, 2 년 연속으로 역임하도록 재임명할 수 있다. 국가 임원은 <u>글로벌연맹</u> 모금위원회에서 소속 국가 그룹을 대표하고 대변인 역할을 한다.	끝나면 자동으로 공동위원장직을 승계한다. (c) 이사회가 임명한 임기 1 년의 SIA 이사회 연락 담당 위원 1 명. 이사회 연락 담당자가 이사회 임기 첫해에 임명된 경우, 이사회 임기 2 년 차에 이사회 연락 담당자로 재임명될 수 있다. (d) SIA 이사회는 임기 2 년의 국가 임원을 최대 9 명까지 임명하며, 2 년 연속으로 역임하도록 재임명할 수 있다. 국가 임원은 연맹 모금위원회에서 소속 국가 그룹을 대표하고 대변인 역할을 한다.
--	---	--

단서: 새로운 글로벌 모금 위원회의 구조가 채택되면 2025 년 9 월 1 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경 시점 이전에 임명되어 현재 SIA 모금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개인은 SIA 이사회의 2025-2026 글로벌 모금 위원회 임명을 기다리는 동안 공동위원장 또는 차기 공동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받는다. 최초 임명된 모든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2025 년 9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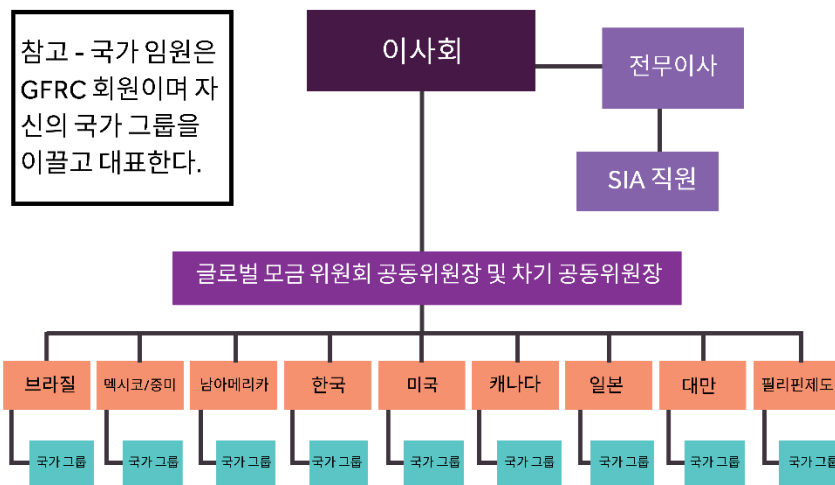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다. 2026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기부터 모든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임기 종료를 따른다.

근거:

SIA는 기부금 없이는 혁신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2021-2031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IA를 대표하는 각 리전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일은 중요하다. 해당 안건이 승인될 경우, 새로워지고 규모가 확대된 글로벌 모금 위원회를 통해 각 리전 대표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기부금 모금을 지원하고, 연맹 전체에 강력한 자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과거 모금 위원회는 대부분의 미국인 위원과 아시아 각지의 위원 일부로 구성되었다.

확대된 GFRC는 성공적인 드림 빅 캠페인 위원회에 사용된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국가 임원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소속 리전의 회원 그룹을 이끄는 확대된 구조를 통해 더 많은 회원이 연맹 전체의 자선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국가 그룹이 속한 리전의 문화에 더 적합한 모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직책 확대를 통해 개별 회원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기존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안건이 승인될 경우, 글로벌 모금 위원회의 구조 및 GFRC 내의 다양한 직책에 대한 책임과 자격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GFRC 공동위원장/차기 공동위원장

GFRC 공동위원장 또는 차기 공동위원장은 글로벌 모금 활동을 직접 관리하고 국가 임원 및 국가 그룹에 지침을 제공한다.

임기	GFRC 차기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1 년이며, 1 년 임기의 GFRC 공동위원장직을 승계한다.
책임	• 자선 문화 조성 및 조직의 자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 글로벌 모금, 기부자 참여 및 유지 전략에 대한 협업 • 국가 임원들과 전략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 • 국가 임원이 국가 그룹을 모집하고 이끌도록 지원 • 이사회 연락 담당자와 협력하여 이사회의 기금 모금 참여 장려 • SIA 직원 팀과 협력하여 GFRC 와의 회의 및 후속 업무를 조정하고 이행 • 주요 기부 팀과 협업하여 새로운 기부에 대한 영감 제공 • 모금 목표 관련 진행 상황 모니터링
자격	• 양호한 상태의 회원 • 활동 중인 로열 소사이어티 또는 스타게이지 회원 • SIA 사명 및 목표에 대한 열정 • 모금에 대한 열정 • 가상 환경에서 편안하게 작업 가능 • 뛰어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 • 모금, 마케팅, 영업, 비영리 단체 관리 또는 기타 관련 분야 경력 우대(필수 사항 아님) • 자원봉사 단체 통솔 경력 우대(필수 사항 아님)
선출/임명	SIA 이사회가 자체 추천을 통해 임명
SIA 직원 팀	모금 개발 이사 및 기부 관계 이사(전략 및 리더십), 기부 관계 주임 (행정 및 프로젝트 관리)
보고	이사회에 보고

GFRC 국가 임원

GFRC 임원은 국가 그룹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 국가의 기금 모금 활동을 주도한다. 이들은 모든 GFRC 회의에서 소속 국가 그룹 회원의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규모	• 각 지역을 대표하는 7~9 명의 국가 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	• 2 년, 임기 종료 전 2 년 추가로 연임 가능
책임	• 국가 그룹을 대상으로 주도적인 모집 및 관리 • 글로벌 모금, 기부자 참여 및 유지 전략에 대한 협업 • 주요 기부 팀과 협업하여 새로운 기부에 대한 영감 제공 • SIA 직원, 이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업 • 모금 목표 관련 진행 상황 모니터링
자격	• 양호한 상태의 회원 • 활동 중인 로열 소사이어티 또는 스타게이지 회원 • SIA 사명 및 목표에 대한 열정 • 모금에 대한 열정 • 가상 환경에서 편안하게 작업 가능 • 뛰어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 • 모금, 마케팅, 영업, 비영리 단체 관리 또는 기타 관련 분야 경력 우대(필수 사항 아님)
선출/임명	SIA 이사회가 자체 추천을 통해 임명
SIA 직원 팀	모금 개발 이사 및 기부 관계 이사(전략 및 리더십), 기부 관계 주임 (행정 및 프로젝트 관리)
보고	GFRC 공동위원장 및 차기 공동위원장에 보고

GFRC 국가 그룹 국가 그룹은 GFRC 임원과 협력하여 소속 국가에서 모금 전략을 실행한다. 국가 리더는 GFRC 회의에서 해당 국가 그룹을 대표한다.	
구성	모금 위원회 국가 임원이 통솔한다. 위원 구성: • 리전 모금 위원장 • 고액 기부 홍보대사 - 해당 국가의 기부자 관계 태스크포스'를 이끈다. • 사업 홍보대사(대의 파트너십, 기업/재단) • 커뮤니티/LYD.org 홍보대사(비회원 후원자)

	• 특별 행사 홍보대사(다양한 행사에서 모금 활동이 대표성을 가지도록 지원) • 기타 구성원: 관심사 및 기술 수준에 따라 활동
임기	2 년, 임기 종료 전 2 년 추가로 연임 가능
책임	• 자선 문화 조성 및 조직의 자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 글로벌 콘텐츠 및 모금 전략에 대한 협업 • SIA 직원, 이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업 • SIA 미션 및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기부자 및 잠재적 기부자 참여 확대 지원 •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팀원들과 협업
자격	• 양호한 상태의 회원 • 활동 중인 로열 소사이어티 또는 스타게이지 회원 • SIA 사명 및 목표에 대한 열정 • 모금에 대한 열정 • 가상 환경에서 편안하게 작업 가능 • 뛰어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 • 모금, 마케팅, 영업, 비영리 단체 관리 또는 기타 관련 분야 경력 우대(필수 사항 아님)
선출/임명	국가 임원이 리전 총재 및 차기 총재와 협의하여 임명함
SIA 직원 팀	모금 개발 이사 및 기부 관계 이사(전략 및 리더십), 기부 관계 주임 (행정 및 프로젝트 관리)
보고	국가 임원에게 보고
회의	권고 사항: 국가 그룹의 필요에 따라 10~12 명을 모집하며, 국가 임원이 통솔하고 관리한다.

재정적 영향: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과거 미국 중심적이었던 현재의 모금위원회 모델보다 제정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를 더욱 생산적으로 진행하고 비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GFRC는 일 년 내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회의의 대략적인 비용은 SIA 회원의 5 개 주요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 2 명이 2 시간 동안 이중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6,380 달러, 연간 약 38,400 달러이다.

이러한 비용 상승분의 일부는 모든 SIA 모금팀 회의(글로벌 모금 위원회, 리전 모금 의장 회의, 임시 모금팀 업무)를 격월로 1 회, 2 시간 동안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모금팀에서 통역 시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상쇄할 수 있다. 한데 모여 회의를 개최하면 자선 문화 조성에 참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연맹 전체의 모금 성공 및 도전 과제를 한 번에 논의하여 협력이 증진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SIA 이사회가 제공하는 정보 해당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 해당 SIA 절차에 따른 다음과 같은 개정안 또한 채택되어 기존 4 항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운 4 항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변경 사항:

해당 안건이 채택될 경우, SIA 절차 H. 후보 지명과 선출 절차 4.는 다음과 같이 대체하여 개정된다.

4. 글로벌 모금 위원회(GFRC)

- a. 9 월 1 일까지 SIA 서기/회계는 각 회원이 2 명의 글로벌 모금 위원회 차기 공동위원장(매년 임명) 또는 GFRC 국가 임원(2 년마다 임명) 중 하나의 직책에 임명될 후보로 자기 자신을 자체 지명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SIA 의 사명과 목표에 대한 열정, 모금에 대한 열정을 가진 로열 소사이어티 또는 스타게이저 기부자로 활동 중인 회원은 늦어도 11 월 30 일까지 필수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SIA 이사회의 심사를 받는다.
- b. 필요한 능력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SIA 이사회는 늦어도 4 월 1 일까지 글로벌 모금 위원회 차기 공동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임기는 9 월 1 일부터 2 년 동안이며, 차기 공동위원장으로 1 년, 공동위원장으로 1 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 c. SIA 이사회는 2 년마다 각 리전(아메리카 델 수르, 브라질,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중미, 필리핀, 대만, 미국)의 국가 임원직 지원자를 검토한다. SIA

이사회는 늦어도 4 월 1 일까지 각 지역의 국가 임원을 임명한다. 임기는 9 월 1 일부터 2 년 동안이다. 국가 임원은 2 년의 추가 임기 동안 재임명될 수 있다.

- d. SIA 이사회는 매년 회원 중 한 명을 GFRC 이사회 연락 담당자로 임명하며, 이는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8 월 31 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사회 임기 첫해에 GFRC 이사회 연락 담당자로 임명된 SIA 이사회 회원은 이사회 임기 2 년 차에 재임명될 수 있다.
- e. SIA 이사회가 연맹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한 경우, GFRC 위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제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제적은 제적되는 개인의 계약 권리에 아무런 침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명은 재직 중인 이사 2/3 가 투표로써 찬성해야 하며, 제명 대상 GFRC 위원이 SIA 이사회의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 이후에만 이루어진다.
- f. GFRC 공동위원장직의 공석은 SIA 이사회가 임명한 차기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충원한다. 승격된 차기 공동위원장은 공석으로 남은 임기에 기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자의 임기를 더한 나머지 임기를 수행한다. GFRC 차기 공동위원장직의 공석은 SIA 이사회가 임명하여 충원한다. 임명 기간은 남은 임기 동안이며, 임명된 위원은 다음 9 월 1 일에 공동위원장직을 맡는다. 국가 임원직의 공석은 SIA 이사회가 남은 임기 동안 충원한다.

총회 조직의 권고: 대의원단은 클럽이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을 권고합니다.